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번호 | 2218 |
|------|------|

2017. 11. 30.
기 획 경 제 위 원 회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3일, 신선택의원의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17년 11월 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제12차 기획경제위원회(2017.11.30.)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신선택 의원)

1. 제안이유

- 매년 서울시의 노동단체 지원계획을 통해 한국노총 조합원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가 미약한 바, 학자금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급에 관한 사업내용을 신설함
(안 제4조제1항제4호).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중인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노총 조합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나. 한국노총 장학금 지원사업 현황

- 서울특별시(이하 “시”)는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양대노총에 사업비를 지원중이며, 최근 3년간 해당사업의 예산은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노동단체 지원사업 예산〉

(단위 : 천원)

| | | 2016 예산 | 2017 예산 | 2018 예산(안) |
|--------|---------|-----------|-----------|------------|
| 노동단체지원 | | 3,706,000 | 4,356,000 | 2,956,000 |
| 한국노총 | | 2,206,000 | 2,356,000 | 2,256,000 |
| | 장학금지원사업 | 1,306,000 | 1,206,000 | 1,106,000 |
| 민주노총 | | 1,500,000 | 2,000,000 | 700,000 |

- 민주노총으로 지급된 보조금의 집행률은 2016년에는 약 51%(7억 9천만원 집행), 2017년에는 0%임.
- 이 중 한국노총의 경우 지원금액의 절반 이상을 조합원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최근 3년간 보조금을 통해 한국노총 조합원인 근로자 자녀 2,670명에게 38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음.
- 대학생의 경우 300만원(반기 150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160만원(분기 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중임.

〈최근 3년간 장학금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지원인원 | 2,670 | 510 | 480 | 480 *대학생(하) 19명 반납 | 예산액범위 내 (1,200백만원) 선발예정 |

| | | | | | |
|------|-------|-------|-------|-------|-----------------------------------|
| 지원금액 | 3,871 | 1,300 | 1,300 | 1,271 | ·대학생:346명 ·고등학생:101명 (11월중) |
|------|-------|-------|-------|-------|-----------------------------------|

- 한편, 한국노총의 장학금 지급사업은 내·외부의 감사를 통해 소득 및 재산기준 초과자와 근무지가 서울지역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장학금 수혜자가 「근로자 자녀 장학금 운영계획」의 지급기준과 맞지 않고, 지급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부적절하게 운영됨에 따른 경고를 받은바 있음.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조사결과〉

- ① 근무지가 서울지역이 아닌 타 지역 근무지 근로자에게 장학금 지급
- 본사 이전으로 인한 서울지역 외 근무 조합원에 장학금 지급
- ② 장학생 추천기준 미달자인 “상용근로자 연평균 임금 총액(3,489,618원)을 초과한 자” 1명, “전년도 재산세(10만원) 초과자” 1명에게 장학금 지급
- ③ 규정상 타 기관으로부터 학비 및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 한국노총 장학금 지급액의 60%이상 고지받은 자는 제외대상이나 장학금 지급

- 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대상에 대해 사업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만 지급했을뿐, 관련 사업의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시는 동 개정안을 통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학금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강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한국장학재단 시스템 공유 및 검증 등 해당 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임.

다. 종합의견

- 시가 시행중인 노동단체 지원사업 중 한국노총의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사업은 조례상의 명확한 근거 없이 동 조례 제4조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해왔음.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범위)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상담 사업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3. 근로자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
4.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향상,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현행 조문상의 근로자 사기진작 사업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시 감사위원회를 통해 조사결과에 장학금 지급근거를 정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지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자녀 학자금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동 개정안의 발의취지에 공감하는 바임.
- 실제로 경기도, 동두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등 4개 지자체에서 근로자 및 가족의 장학금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의회와 시의 감사를 통해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한 부실한 운영에 관해 지적된 바, 시는 장학금 지급사업 자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관련 사업계획을 재정비한 만큼 새로 수립한 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더불어, 향후 동 사업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건택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218 |
|----------|------|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3일
발 의 자 : 신건택, 강감창, 김진수,
김진철, 김용석(서초),
맹진영, 우미경, 유 용,
이상목, 조상호, 최호정 의원
(11명)

1. 제안이유

매년 서울시의 노동단체 지원계획을 통해 한국노총 조합원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가 미약한 바, 학자금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급에 관한 사업내용을 신설함
(안 제4조제1항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노동단체 소속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정(안) |
|---|--|
| <p>제4조(지원범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상담 사업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3. 근로자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향상,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p>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p> | <p>제4조(지원범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상담 사업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3. 근로자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 4.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노동단체 소속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5.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향상,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p>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p> |